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조례안

검 토 보 고

1. 회부경위

가. 의안번호 : 제281호

나. 제 안 자 : 서호연 의원 외 9명

다. 제안일자 : 2022년 10월 17일

라. 회부일자 : 2022년 10월 21일

2. 제안이유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 변화에 따른 필요성 감소로 위원회 폐지 필요

3. 주요내용

가. 「서울특별시 희망경제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폐지

4. 검토의견 (수석전문위원 강상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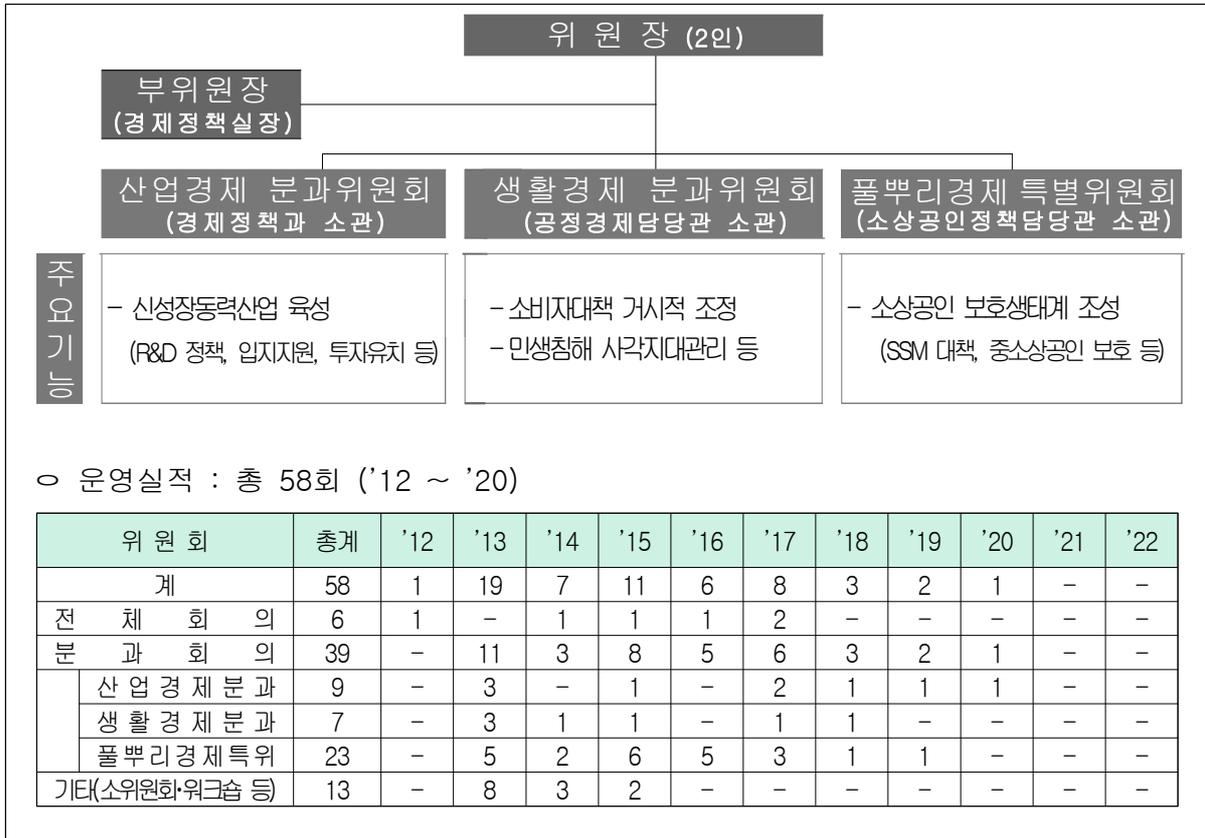
가. 조례안의 개요

- 2012년부터 경제정책 자문기구로 운영된 ‘희망경제위원회’가 다른 위원회와의 기능 중복 등 여건 변화로 존치 필요성이 감소함에 따라 이를 폐지하려는 것임.

나. 희망경제위원회의 기능 및 운영 현황

- 희망경제위원회(이하 “희망위원회”)는 서울시의 경제정책 개발과정에 시민참여를 보장하고, 지역경제와 산업정책 전반에 관한 정책 자문기구로 운영하기 위해 2012년 설치됨.
- 현재 희망위원회는 「시·도경제협의회규정」에 따른 지역경제 협의회의 기능과 서울시 산업·경제 관련 ▶거시 정책 조정과 중장기 계획 수립·집행, ▶시와 자치구 또는 위원회 간의 협의·조정, ▶신성장 동력 산업과 도심형 제조업, 금융산업, 마을기업 육성 등에 관한 정책 수립 등에 대하여 자문·심의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음.
- 행정1부시장과 민간위원 1명이 공동으로 위원장을 맡고, 30명 이내의 산업·경제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전체회의와 2개 분과(산업경제, 생활경제), 1개 특별(플뿌리경제)위원회 등의 분과 회의 등을 총 58회 개최함.

< 희망경제위원회 구성 및 운영실적 >



○ 그러나 희망위원회 설치 이후 경제·산업 환경의 변화와 경제·산업 관련 조례 제·개정 등으로 경제정책실 소관 다른 위원회와 기능이 중복되면서 2020년 이후 운영실적이 전혀 없는 상황임.

○ 이에 따라 서울시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에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됨.

< 2021년도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

- ▶ 평가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제13조~제15조) 위원회 활동 점검, 위원회 통합·폐지, 위원회 운영공개·보고 등
 - 추진내용 : 위원회 전수조사 및 위원회 활성화·통폐합 등 정비

▶ 위원회 운영평가 결과

- 폐지 대상 위원회 : 경제민주화위원회 , 공동협력사업심의위원회,
희망경제위원회 등 3개 위원회
- 폐지사유 : 설치목적 달성 및 여건변화로 필요성 감소
- 폐지방법 : 조례 개정

다. 조례 폐지의 필요성

- 희망위원회는 2012년 설치 이후 경제·산업 전반에 관한 심의·자문 기능을 수행하였으나, 금융산업정책위원회 등 각종 경제·산업 관련 위원회와 유사 중복된 기능을 수행해 왔음.
- 또한, 최근 2년간 위원회 개최실적이 전무해 사실상 유명무실해진 상태임.
- 이에 서울시는 설치목적 달성과 경제 여건 변화에 따라 위원회의 필요성이 감소하였다는 사유로 폐지 대상 위원회로 분류하였고, 이 결과를 반영해 폐지조례안이 발의됨.
-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해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안 된다는 점¹⁾에서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정비하는 것은 바람직한 입법 조치임.

1) 「지방자치법」 제130조(자문기관의 설치 등)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는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설치된 다른 자문기관과 성격·기능이 중복되는 자문기관을 설치·운영해서는 아니 되며,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성격과 기능이 유사한 다른 자문기관의 기능을 포함하여 운영할 수 있다.

- 그러나 희망위원회는 고유 역할 외에도 「시·도경제협의회 규정」 2)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지역경제협의회의 기능을 대신하고 있어 조례가 폐지되면 지역경제협의회의 공백이 발생함.
- 이에 “서울특별시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이 발의(서호연 의원 대표발의, 2023.2.1.)되어 우리 위원회에 회부됨.
- 그러나 지역경제협의회 외에도 희망위원회가 자문·심의하고 있는 기타 사항과 다른 조례에서 ‘희망경제위원회’가 기능을 대신하고 있는 내용이 동시에 개정되지 않아, 추후 일괄 정비가 필요함.

<희망경제위원회 폐지에 따른 기능 대체 현황>

희망경제위원회 조례(제4조)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제2조)	기타 조례
1. 산업·경제에 관한 주요 거시적 정책의 조정에 관한 사항	1.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주요 시책에 관한 사항	
2. 산업·경제에 관한 중장기계획 수립 및 집행에 관한 사항	2. 중장기 경제사회발전계획에 관한 사항	
3.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시도경제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관한 사항	
4.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 관내 20이상의 자치구와 시와의 협의조정이 필요한 사항	3. 지역경제에 관하여 시·자치구·유관기관 간 협의 조정이 필요한 사항	
5. 「서울특별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자문기관 운영의 효율성 향상을 위한 자문기관 정비계획 및 조치 결과 등을 종합하여 작성한 자문기관 운영현황을 매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2)제9조(지역경제협의회의 설치) ①협의회에 제출할 의안에 대한 의견의 수렴·조정을 위하여 각 시·도에 지역경제협의회를 설치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경제협의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은 당해 시·도의 조례로 정한다.

희망경제위원회 조례(제4조)	지역경제협의회 조례안(제2조)	기타 조례
관련 조례 제2조에서 정한 201상의 산업·경제에 관한 위원회간의 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6. 신성장동력산업 및 도심형 제조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		「전략산업육성 및 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에 반영 「도시형 소공인 지원 조례」에 기반영
7. 산업·경제 분야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는 정책집행사항으로 거시적인 정책협의와 조정이 필요한 사항		
8.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62조의 15에 따른 중소기업육성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중소기업 지원 및 육성에 관한 조례」에 신규 반영 필요
9. 「소상공인기본법」 제3조에 따른 소기업에 대한 지원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		「소상공인 기본 조례」 제6조제3항, 희망경제위원회 자문 조항 삭제 필요
10. 다른 법령에 따라 시장이 수립하여야 하는 산업·경제 분야 및 중소기업 지원정책에 관한 사항		「기술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조례」 기술이전 사업화 촉진계획 수립 기반영
11.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서울특별시 장애인기업활동 지원 조례」 제9조2항에 신규 반영 필요
12. 다른 법령 및 조례가 위원회의 자문사항으로 정하고 있는 사항		「서울특별시 시민시장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7조 시장시장운영위원회 대행으로 희망경제위원회가 심의·자문 조항 삭제 필요
13. 「서울특별시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에서 규정하는 협동조합의 활성화 등에 관한 사항		「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조례」 - 협동조합 위원회, 사회적경제위원회가 심의 대행(제7조)하도록 기반영(2016.1.).
14. 시 관내 마을기업의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의 사회적경제위원회가 대신하도록 기반영(2016.1.).
15. 시 관내 금융산업 육성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금융산업 육성에 관한 조례」 제11조 금융산업정책위원회(2016.9.)에 기반영

담당 조사관	연락처
이시우	02-2180-8055